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권도균*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기존의 연구동향
 - 3) 연구방법
2.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 현황
 - 1) 현황
3.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
 - 1) 기관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
 - 2)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 소통의 문제
 - 3) 평가제도 운영의 문제
 - 4) 평가지표의 문제
4.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 개선안
 - 1) 법제도적 측면
 - 2) 지표적 측면
5. 결론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협동과정 박사과정.

▪투고일 : 2016년 3월 20일 ▪최초심사일 : 2016년 3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6년 4월 15일

[국문초록]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2008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발전했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기관평가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다. 평가제도 자체의 문제, 운영의 문제, 평가지표의 문제, 평가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 간 소통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평가제도의 현황과 개념, 목적, 지표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제도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 교육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교육청 현장에서 느끼는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평가주기, 지표 개수, 평가프로세스, 평가지표, 우수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의 발전을 바란다.

주제어 : 기관평가제도, 평가지표, 평가프로세스, 개선방안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물관리 업무와 인프라를 현행 공공기록물법을 포함한 법제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를 통해 기관은 인프라를 포함한 기록관리 현황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향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는 2008년도에 시작하여 2016년 3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평가대상은 정부부처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기관,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국공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이다.¹⁾ 국가기록원이 해당기관의 업무실적을 제출받아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기관 평가를 추진해왔다. 점수가 높게 잘 나온 기관은 우수하고, 점수가 낮게 나온 기관은 기록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기준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 기관에서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록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록관리 전반적인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필수 인프라(시설, 제도, 인원 등)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갖추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정을 따르며, 내부 직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기관들이 높은 점수와 등급²⁾을 받기 위해 인프라를 갖추고 지표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기록관리 전인을 한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기관평가가 진행되면서 국가기록원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이 나타났고, 기관평가 지표와 그 내용이 현장에 맞지 않아 흔히 말하는 높은 수준의 법제도와 낮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이질적인 모습도 드러났다.³⁾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가 기관평가 시작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⁴⁾

- 1)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주관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
- 2) 2014년까지는 최고 등급이 S등급, 2015년 이후부터는 가등급이라고 지칭한다.
- 3) 교육부 운영지원과-12950(2015.5.21.) 「2015년 기록관리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 상시학습 인정 협조」 공문의 붙임파일 『2조-기록관리 기관 평가 제도 개선 방안』.
- 4) 기관평가 설명회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주로 있었다. 최근 자료로는 권도균, 「기록관리 기관 평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관리 정책토론회1-교육행정분야 기록관리의 쟁점과 과제], 2015.7.17.

평가의 결과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나, 그 내부 사정은 피평가기관과 평가기관인 국가기록원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라 당사자가 아니면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 기록학계에서도 그 내밀한 사정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나 정보공개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분위기를 알기 어렵다. 피평가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재의 평가 제도나 운영 방식, 평가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싶은 의견과 제도상 개선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자제하거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속된 기관이 불이익을 받거나 연쇄적으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오는 영향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기관평가에 대한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진정으로 현장에서 효용성 있도록 견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의 기록물관리가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화단계에 이르렀다고 자료집이나 보도자료에서 자평한다.⁵⁾ 그렇지만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데 기관평가가 도움이 되는지, 다른지 현장담당자들이 느끼는 현실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유형인 시도교육청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 담당자라 지칭)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관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기존의 연구동향

기록관리 기관평가가 현장에서 적용된 부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현장 담당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우는 드물다. 시기적으로 2008년 이전에는 기관평가의 도입 필요성을

5) 이 두 유형의 기관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된 것이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로 다른 유형의 기관보다 오래 되었으며 매해마다 기관평가를 받고 있다.

강조하는 연구와 외국의 지표를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용역연구로 2006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기록관리 국가표준의 체계적 확산방안」이 수행되었다. ISO 15489의 번역판이란 평을 들었던 KS X ISO 15489 기록관리 표준에 대한 이행과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평가제도와 도구 및 절차를 제시하여 정부기관의 기록관리 평가를 체계화하고, 민간기관의 표준 이행을 위한 견인제도를 주장하였다. 각국의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기존 ‘지도·점검제도’의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후 기록관리 평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⁶⁾

2007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는 2006년 연구를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할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매해마다 현황평가를 실시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를 개발한 선구적인 사례로 국내 기록관리 평가의 중요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⁷⁾

이영숙·천권주는 기록관리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인 2006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와 국가기록원이 평가하는 병행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

전수진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지표를 조직환경, 기록관업무, 처리과 업무영역에 맞춰 개발해야 한다고 평가도구 개발에 관하여 논하였다.⁹⁾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연구 중 기관에 적용되는 실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한 두 사례가 있다.¹⁰⁾

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국가표준의 체계적 확산 방안」, 2006.

7)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2007.

8) 이영숙·천권주,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 도입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2006.

9) 전수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지표 개발」,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최현난은 한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서 사용하는 평가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¹¹⁾ 평가가 도입된 초기에 한국의 지표와 3개국의 지표를 비교분석한 것이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신원영은 한국의 기관평가제도가 진행된 6년의 상황을 분석하여 분석한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정리하였고, 국가기록원의 평가 자료와 원칙을 기반으로 2년 동안 평가 점수폭이 큰 피평가기관 8곳을 대상으로 기관의 담당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조사하였다.¹²⁾ 아쉬운 점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현장 적용여부와 발전방안이 피상적인 것이다.

3) 연구방법

국가기록원의 기관평가 자료를 분석하고 피평가기관인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인터뷰는 2015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근무중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8명¹³⁾중 기관평가를 2번 이상 경험한 근무경력 4년차 이상인 인원 15명에 대해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2015년 3월, 5월, 11~12월 3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전화 및 대면으로 질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과 문제점, 발전방안을 듣고 이후 정리하였다. 인터뷰를 한

10) 김솔, 「기록관리 평가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록관리 평가지표 재설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과 백미점, 「기록관리 성숙도 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의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거론하지 않는다.

11) 최현난, 「기록관의 기록관리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2) 신원영, 「한국 공공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3) 16개 시도교육청은 1인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근무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인이 근무하여 18명이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말을 언급할 때는 담당자A, 담당자B 등으로 칭한다.

〈표 1〉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대한 인터뷰 개요

시기	인터뷰 기간 및 방법	질문 내용	1인당 평균소요시간(분)	인원 (명)
1차	2015년 3월 전화인터뷰	평가제도, 주기, 평가입력시스템 평가주기와 평가프로세스의 적절성 평가제도와 지표의 문제점 평가입력시스템의 입력	3~5	9명
2차	2015년 5월 대면인터뷰	평가제도, 주기, 지표, 발전방안 기관평가가 업무 도움 여부 기관평가의 효과와 부작용 평가주기와 평가프로세스의 적절성 평가지표의 문제점 평가제도와 지표의 발전방안	10	15명
3차	2015년 11월~12월 전화인터뷰	정책과제, 우수사례, 발전방안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정책과제와 우수사례 제출 내용 정책과제와 우수사례 평가 결과 정책과제와 우수사례의 문제점 우수사례를 포함한 지표의 발전방안	5~7	13명

2.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 현황

1) 현황

기관평가의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집¹⁴⁾과 한국국가기록 연구원의 자료집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14) 국가기록원, 「2016년도 기록관리 평가계획 자료집」, 2016.1, 2-6쪽 중 인용.

(1) 법적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평가)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발표 자료집에 따르면 1999년 법령 제정 당시에는 실태 지도점검으로 기록관리 수준만 진단하였다. 2007년, 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공공기관 평가 및 국무회의 보고 근거를 마련했다.

(2) 개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과정뿐 아니라 이를 관리·지원하는 기관 역량과 대상 집단의 만족도까지를 확인·검토할 수 있는 기록관 단위의 종합평가로 정리하였다. ‘기록관리 업무활동 전반의 과정과 이에 관한 기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이라 했다. 생산, 정리, 기술, 보존, 이관, 폐기 등과 같은 기록관리의 고유업무와 이러한 고유 업무를 관리, 지원하는 경영, 정책,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관 역량에 관한 정책, 사업, 업무를 대상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결과 등을 점검, 평정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¹⁵⁾

(3) 목적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정리하면 기관평가는 네가지의 목적을 지닌다고 본다.

첫째, 기록물관리법과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실효

15)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2007, 65쪽.

성과 효율성을 갖춘 제도적 견인 장치로서 기능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관리법과 관련 표준을 실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평정함으로써 정착되고 확산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컨설팅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피평가 기관에 대한 상벌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보다는 피평가기관의 업무개선을 통해 기록관리 실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기관장부터 기관 전체 구성원들의 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책무과 사명감등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의 정착 및 확산으로 행정의 책임성, 신뢰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업무행위를 개선하고 설명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¹⁶⁾

(4) 평가대상 기관 및 지표

기관평가 대상 기관은 기관평가 초기 시점부터 해마다 증가했다. 2008년에 57개, 2009년 110개, 2010년 229개, 2011년 240개, 2012년 443개, 2013년도에 국공립대학교를 추가하여 현재와 같은 477개 기관이 대상이 되었다.

〈표 2〉 2016년 현재 평가대상기관

합	중앙 행정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교
477	51	143	17	176	39	51

1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2007. 66쪽.

(5) 평가자료 제출·등록 방법

전년도 기록관리 업무실적 및 인력·서고·장비 현황을 기록관리평가시스템(RMES)에 등록(시스템입력일 기준)하고 있다.¹⁷⁾ 제출 방법도 업무실적 문서 파일을 PDF변환하고, 평가지표별로 압축파일화 하여 저장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¹⁸⁾

(6) 평가 프로세스

평가 프로세스는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1차로 기록관리평가시스템에 제출된 실적을 온라인으로 평가하고, 1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2차로 권역별, 기관별 점검회의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확정한다. 단, 정량평가 부분만 1차에서 점수를 발표하고 이의제기를 받는다. 정성평가는 11월의 최종 평가에서 발표된다.

(7) 평가지표의 변화

평가지표의 최근 변화사항은 다음의 <표 3>, <표 4>를 보면 그 추이

-
- 17) 같은 자료집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평가, 이력관리, 개선과제 도출, 우수사례 발굴, 컨설팅 자료로 활용한다는데, 국가기록원의 업무가 다른 여러과들이 매해 분기나 반기마다 서너번씩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조사 통계를 공문으로 요구한다. 그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업무를 도와주는 커녕 힘들게 한다고 느낀다. 국가기록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의 자료 공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몇 년동안 제기하지만 해마다 반복된다. 이런 하나하나가 국가기록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 18) 평가시스템의 입력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입력된 글자가 한글로 보이지 않는 사례, 파일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 30분 이상 입력할 경우 자동으 로 로그아웃되는 문제가 제기한 바 있다.

를 알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지표상 변화는 최근 경향과 거리가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만 살펴보았다.

〈표 3〉 2013~2014년 평가지표

분야	항목	평가 지표	배점	
			2014년	2013년
기록관 운영 (37)	인식 (21)	1-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기관장 관심도	6	5
		1-2. 기록관리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10	10
		1-3. 기록관리 교육실적	5	5
	조직 (10)	2-1. 기록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10	10
인프라 (6)	3-1. 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준수	6	5	
기록관리 업무 (44/39)	생산·관리 (14)	4-1.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 작성·관리의 적절성	4	5
		5-1. 시스템을 활용한 생산현황보고 준수	5	5
		5-2. 기록물 분류기준 관리의 적절성	5	5
	이관 (15/10)	6-1. 처리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10	10
		6-2. 기록관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¹⁹⁾	5/-	5/-
	보호(5)	7-1. 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시행 여부	5	5
처리(10)	8-1.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절차 준수 ²⁰⁾	10	10	
기록정보서비스 (15)	공개 (10)	9-1.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실시	10	10
	이용 (5)	9-2. 기록관 보유 목록 공개 및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	5	5
기타 (4)		10-1. 기록관리 우수사례	4	5
		10-2. 기록관리 사회적 신뢰도 반영	감점	감점
		10-3. 평가자료 제출기간 준수	감점	감점
계		지표수 16개	95	95

19) 기록관 기록물 이관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지표로 시도교육청은 해당하지 않아 총점이 95점이다.

20) 실제로 2014년도에는 기록관리 폐기 부분에 대한 점수가 4점만 적용되었다. 이 유는 해외공관에서 과거사 관련 기록물이 발견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기관에

2013년~2014년도 <표 3>의 내용이 <표 4>로 바뀌면서 회의록 및 시청 각기록물 관리, 생산현황보고, 기록물 분류기준(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지표가 빠졌다. 시도교육청에서 완비가 되었거나 절차를 잘 지키고 있어 사실상 평가의 의미가 없는 지표들로 보여진다.

<표 4> 2015~2016년 평가지표

구분	항목	평가 지표	배점	
			2016년	2015년
기록관 운영	1. 기록관 운영의 적절성	1-1. 인프라(조직, 인력, 시설·장비) 구축 (10)	10점	10점
	2. 기록관 업무기반의 적절성	2-1. 지도·감독 및 교육 2-2.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0점 10점	5점 5점
기록관리 업무	3. 기록관리 업무절차의 적절성	3-1. 기록물 이관	10점	10점
		3-2. 기록물 평가 및 폐기	10점	10점
기록서비스 / 가중치 업무	4. 기록물 공개 및 활용	4-1.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10점	5점
		4-2.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10점	5점
	5. 기록관리 업무개선	5-1. 기록관리 우수사례	10점	10점
		5-2. 기록관리 사회적 신뢰도	가점·감점	
	정책과제 업무	1. 보유기록물 효율적 활용기반 조성 2. 전자기록물 이관 개선방안 3. 구전자문서 관리방안 개선 4. 기록콘텐츠, 전시 등 서비스 확대 5. 학교기록물 개선방안 마련(시도교육청 필수) ◎ 5개 중 기관별 택 1~2 ※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과제가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20점	40점
	계	지표수 : 10개	100점	100점

대한 폐기 업무 절차를 2013년 말에 중단 시키고,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혹은 미발견 과거사기록물을 찾는 일이 있었다.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가장 긴 시간과 행정력을 소요하는 업무가 평가폐기 인데, 2013년 상·하반기 동안 실제 평가 폐기를 시행한 기관들이 다른 업무를 못해서 평가상 손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때다.

지표중 기록관리시스템 운영과 기록물관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것인데 시도교육청이 전자 기록물 이관이 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정성지표인 우수사례와 정책과제의 점수 비중이 30점에서 50점을 차지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평가 등급과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95점 이상을 가등급, 85점에서 95점을 나등급으로 하여 등급과 점수가 변경되었다. 그 외에 업무들은 평가폐기, 공개재분류, 지도점검등 쉽지 않은 업무수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표이다.

3.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의 문제점

1) 기관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을 올리려는 의도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같은 일부 기관이 어느정도 안정화 시켰다고 국가기록원은 자평한다.²¹⁾ 국가기록원 발표 자료나 통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은 제도나 시설, 기록관리 특정 업무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 담당자에게 그 기관의 기록관리가 잘 되느냐고 물었을 때 잘 하고 있다 자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평가지표에 나온 점수와 담당자가 내부에서 느끼는 시선과 평가는 매우 다른 것이 현실이다.

전문요원들이 느끼는 기관평가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다. 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이 해마다 고민하고 요구받고 결정해야 하는 가장 비중있는 것은 전년도 성과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평가를 잘 받을 것인지,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내년도 평가가 잘 될 것인가이다. 그렇게

21) 국가기록원, 「2017년(16년 실적)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2016.1, 4쪽.

하기 위한 의사 결정은 평가지표에 없는 기록관리 업무는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더라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기록물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기록관리를 하는 것이다. 담당자 A는 이렇게 말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기관에 필요한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지표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업무를 한다. 기관과 담당업무를 하는 기록관 입장에서는 평가지표중 일부는 당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기관 자체의 이미지(기관평가 점수가 발표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하게 된다.”

2)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간 소통의 문제

기관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은 공식적으로 1월에 공문으로 한번, 2월에 현장설명회에서 한 번씩 두 번 한다. 피평가기관은 2월까지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설명회에서 질의 및 의견 건의 시간에 해당지표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대안을 이야기 하거나 그 지표를 변경, 취소해줄 것을 요구한다. 국가기록원은 3월에서 5월 중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지표로 확정하여 발표한다. 담당자 B는 이렇게 말한다.

“법적으로 문제성이 있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제출하거나 현장설명회에서 건의한다. 그러면 국가기록원 평가담당자는 주로 ‘안된다, 어렵다’라고 말한다. 혹은, ‘교육자료에 있는 해당 지표의 설명을 그대로 읽거나 관련 법령을 읽는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나 정책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나 ‘국무회의의 보고사항’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한다.

피평가기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과 지표가 전혀 바뀌지 않거나, 혹은 아주 약간 바뀐 채로 끝나는²²⁾ 상황이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

3) 평가제도 운영의 문제

(1) 평가주기

시도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평가를 받는다.²³⁾ 담당자들과 인터뷰한 바로는 전년도의 자료를 찾고, 가공하여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정도다.²⁴⁾ 매해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을 평가자료를 찾고, 서식에 맞춰 입력하고, 자료를 설명하는 글쓰기를 한다. 이에 대해 담당자 C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전에 했던 업무를 찾고, 필요사진 사진 촬영하고 평가자료 형식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정리하고 이걸 보고하는데 2달이 소요된다. 전년도 12월 말까지 업무를 하고 나면 그 후부터 평균 2달을 다른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어야 할 시간이 정말 부족해진다. 해마다 되풀이하면서 업무담당자 개인의 피로뿐 아니라, 기관의 업무 진행이 잘 안된다. 시도교육청의 특성상 업무를 준비하고 집행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초기 시점의 2개월을 평가 업무에 그냥 보낸다.”

22) 2015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정책과제 점수를 40점에서 20점으로 낮췄으니 정말 의견을 잘 받아준 건지도 모르겠다.

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3항 및 제4항

24) 전화나 대면 인터뷰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2) 평가소요기간

평가자료 입력부터 발표에 소요되는 기간은 9개월 정도 소요된다. 3월에 평가시스템에 입력, 5~6월에 1차 평가 결과 발표, 보완 자료 입력, 10월 혹은 11월 발표되는 것이 2016년 3월 현재까지 평가프로세스다.²⁵⁾ 평가결과 발표이후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기록관리 평가가 기관 줄세우기 용도라고 지적받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대하여 담당자 D는 이렇게 언급한다.

“업무 특성상 남은 1, 2달 정도의 시간동안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매우 힘들고, 다음해 예산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같은 문제라 한다면 평가 시점의 문제와 발표 후 개선까지 3년이 걸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4) 평가지표의 문제

(1) 교육청의 기관 특징

지표를 수행하는 교육청 기관만의 특징과 중요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 업무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 그 구성원에 대한 지원이다. 기관운영의 목표는 학생들의 교육과 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처리과의 95% 이상이 학교이며 그 수가 매우 많다.²⁶⁾ 직원의 90% 이상이 교원이며, 교육 외의 업무는 교원업무경

25)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최근 2014년엔 11월 초중순, 2015년에는 12월에 발표 및 결과 통지 발표를 했다.

26) 시도교육청별로 인구나 학생대비 차이가 있지만 많은 곳은 수백, 적어도 수십이다. 시도교육청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으로 제주나 세종 같은 특별자치시도를 제외하면 학교 수가 상당히 많다.

감이라는 명제에 걸려 학교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와 해당 학교의 특성과 공통적인 듯 하면서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기록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 업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

(2) 지표 수

현행 평가지표는 기록관리 법령에 나온 거의 모든 업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담당자들이 기관평가에 대하여 제일 크게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지표의 개수다. 지표는 2016년 현재 10개이지만, 그 지표를 수행하는 실제 행정력과 거쳐야 하는 것은 그 10배 이상이다. 담당자 E는 협력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기록관리 업무가 간단하게 공문 하나 시행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해야 할 일 중 기록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개 중 한두 개 정도다.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서와 팀,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고 검토, 결재 과정을 거쳐야 간신히 하나를 추진할 수 있다.”

(3) 평가폐기

기록관에서 수행 하는 여러 업무 중 처리과(학교)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의 평가폐기다. 프로세스는 다른 유형의 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처리과(학교) 수와 심사해야 하는 기록물의 수, 각 학교별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다른 기관들과는 차별성을 많이 가진다. 담당자 F는 이렇게 말한다.

“제일 신경 쓰는 업무로 가장 많이 문의하고 관심도 높다. 비전자기록물이 많이 줄었어도 시험관련 기록물, 출석부, 설문지 등은 계속 생산된다. 양도 많아서 하나 하나 제대로 적으면 수십만, 수백만 건이다. 학교 수도 많고 각 학교마다 역사적 환경이 달라 검토해야 할 것도 많다. 아무리 노력하고 처리과(학교)를 재촉해도 업무 수행 기간이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8~9개월까지 걸린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년 내내 폐기만 한다고 느껴진다. 점수가 다른 지표와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10배 이상의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고 시간도 제일 길게 걸린다.”

(4) 공개재분류

실행하기 힘들면서 가장 형식적인 것이 공개재분류 업무이다. 공공 기록물법상 있는 지표지만, 공개재분류 업무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점수를 받기위해 해야 한다. 기록물 건별로 재분류하도록 평가지표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수행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와 연관해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 효과여부는 미지수다. 담당자 G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제대로 하려면 비공개된 문서를 하나 하나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야한다. 그런데 현재 업무담당자나 기록관에서 당시 내용과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현재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당시 업무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하고 있으면 문의할 수는 있지만, 그걸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비공개된 모든 문서를 보려면 시간이 부족하니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재분류해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정보공개 자체가 많지 않고, 정보공개는 처리과에서 담당하므로 효과도 불투명하다.”

(5)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전자기록물 이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과 기록물 이관규정 준수 항목은 현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하 RMS)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가 이관되어야 가능하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2013년까지 수억원에서 20억 가까운 예산으로 RMS를 구축했으나 전자문서가 이관되지 않아 사용도가 매우 낮다.²⁷⁾ 전자문서를 생산하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RMS로의 이관을 위해 몇 년간 업무 진행을 했지만, 2016년 현재 이관 준비중, 혹은 진행중이다. 이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RMS가 교육청 업무환경과 맞지 않은 부분부터 여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설치시기부터 RMS로의 전자문서 이관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시도교육청, 유지보수 업체까지 시도했으나 진행이 되지 않았다. 해결하기 위해 많은 회의와 문제점 분석과 건의, 전자기록물의 정리 작업, 이관시도, 이관실패, 원인분석, 수정작업, 기이관문서 삭제, 원상복구가 반복했다. 교육청은 평가지표상 점수 제외를 하고 있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담당자 H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문서 이관이 하나도 안 되서 법에서 정한 전자기록물의 이관 규정을 못 지키고 있다. 이관시도-문제점발견-패치작업-원상복구를 반복한다. 아직까지 이관이 안되는데, 해마다 전자기록물 이관과 RMS운영을 지표로 내 놓고 있어서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본다. 국가기록원이 이런 문제를 모르는 체 한다고 느껴진다.”

27) 이소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개선전략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2015, 29~52쪽.

(6) 지도감독

지도감독이 처음 지표가 되었던 2012년도에는 소속 전체 기관을 1년 안에 하라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바로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바꿨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처리과 수를 보면 적은 곳은 40여개 미만, 많은 곳은 수백여 곳이 넘는 곳도 있다. 편차가 심하게 다른 교육청들을 일방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특성상 학교 업무에 부담을 준다고 직접 방문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당자 I는 이렇게 말한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나 제주도 같은 곳은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들이면 면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지만,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곳은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세워도 다른 업무 안 하고 지도감독만 해도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한다. 처리과가 많고 지역이 넓을수록 실행하기 힘들다. 거기에 교육청 내부적으로 학교에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요구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지침이 해마다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학교에 실제로 지도점검을 가도 시간에 쫓기고 학교와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 있지 못한다.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고 학교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7)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목록 공개와 열람 공간과 규정 및 지침 마련하고 소장 기록물 전시 및 편찬을 하여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국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지표를 기계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 현장의 담

당자 J는 이렇게 말한다.

“기록관별로 기록관 운영 규정에 이미 다 있는 내용인 열람규정 및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지표가 생겼다. 그래서 기록관 운영규정에 이미 되어 있는 옥상옥 같은 것이고, 달성이 되어있는 지표라 의미가 없으니 변경을 하거나 없애 달라고 건의했는데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전년도 평가등급이 A였다가 B로 떨어졌다. 뻔히 있는 것을 알지만 점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열람규정을 만들었다. 만든다고 자료 조사하고, 의회까지 통과시키느라 시간과 노력을 엄청 들였다. 그랬더니 다음해에 기록관 운영규정에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고 지표를 바꿨다. 이외에도 기록물을 이용한 전시 및 편찬은 기록관 단계에서 예산이나 인력등의 문제로 추진하기 어렵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야 할 지표를 기록관에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무리한 적용이 여러 번 있었다.”

1인 기록관이라는 기관 사정상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지표로 정량평가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8) 우수사례

다른 정량평가 지표에 비해 우수사례는 어떤 사례를 제출해야 하는지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지표이다. 국가기록원 담당자는 업무과정중에 잘한 사례 및 타기관에 전파가능한 사례를 ‘계획 수립-집행-결과 단계별 참신성과 효과’의 기준에 맞춰 제출하라 하고, 피평가기관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시 제출한다. 기관의 실제 효과와 국가기록원의 평가는 다르고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느낀다.

첫째,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어 불명확하고 변별력이 없다.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해도 점수를 받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사례가 많다.

둘째, 우수사례라 발표가 되지만 소개된 기관의 담당자들조차도 왜 우수사례로 뽑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있고, 적용하기 힘든 사례도 있다. 이미 다른 기관들이 다 해놓은 사업을 예산문제나 다른 이유로 늦게 시행한 것을 우수사례로 발표한 경우도 있다.

셋째,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 기관에서 정말 필요해서 하고 실제적인 업무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다. 기관 사정을 제출 자료에 설명을 해도 반영이 안되고, 마지막 발표 때 점수가 나오는 거라 국가기록원의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

넷째, 기관 사정과 특성을 반영한 잘된 사례들도 전파나 소개가 안 되고, 가등급이나 최고 기관으로 선정된 곳의 내용만 소개가 된다. 전체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한 지표가 아니라 기관 출세우기에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부실하다. ‘우수사례 해당없음’이나 ‘특정부문에 치우침’ 혹은 의견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9) 정책과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평가강화 및 기록관리 내실화라는 목적하에 2015년도에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점수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가 1개기관 가등급, 9개기관 나등급, 4개기관 다등급, 1개기관이 라등급이 나왔다. 라등급을 제외하더라도 17개 시도교육청중 14개 기관이 그 전년도에 우수한 성적(가,나등급)이었던 것에 비하면 인위적

인 점수 등급 조정을 하여 다른 강제적 하향화라고 여겨진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정량평가 대상 업무에서 50점 만점을 받고도 정책과제와 우수사례에 대한 점수가 높지 않아 대부분의 기관이 나등급 이하가 되었다. 공통의 업무수행결과를 가지고도 점수편차가 심하다. 담당자 K는 이렇게 말한다.

“정책과제라 하면 많은 시간과 조직, 인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1년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전문요원 1인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제출한 것 중에 학교기록물관리 개선으로 2013년도에 시작하여 2014년도까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전문요원들이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와 공동으로 만들었던 기록관리 표준이 두 개 있다.²⁸⁾ 학교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최초의 지침으로 학교 기록관리에 대한 실질적 매뉴얼을 보급하고, 단위과제를 변경하는 중요한 성과를 냈다. 참여한 곳에서 이를 제출했는데 점수가 높게 나온 기관과, 낮은 기관이 있으니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심이 간다. 평가 결과를 보면 정성평가와 우수사례에 대해서 딱 한줄 왔다. ‘업무가 특정 부분에 치우쳐 있음’. 점수가 잘 나온 다른 기관은 좀 더 자세하게 적었다. 국가기록은 당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을 추천 받아 구성했고²⁹⁾ 우리 기관도 추천했다. 하지만 결과는 점수가 좋지 않아 많이 억울하게 느꼈다.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간신히 획득했는데, 정책과제 점수가 안 좋아서 등급이 안좋다. 점수를 40점에서 20점으로 점수를 낮추더라도 기록관리 발전에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

28) NAK/G 9:2014(v1.0)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v1.0)과 NAK/G 10:2014(v1.0)학교 공통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 기준(v1.0)이다.

29) 「2015년 [14년 실적] 기록관리 평가 결과」, 국가기록원 보도자료, 2015.11.03.

4.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측면

(1) 소통문제

담당자들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한다. 담당자 A의 의견이다.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간 사이에 평가주기, 평가 기간, 발표방식, 평가지표 수와 내용들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선현장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야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 필요하다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나 정책전문위원회와 담당자들간 소통의 자리도 만들어야 현장과 정책간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 기록관리의 실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소통이 제일 시급하다.”

(2) 기관 평가주기와 평가입력 발표 기간의 변화, 평가담당인원 확대 및 지원

기관 평가가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려면 주기와 발표기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기록원은 평가 인원확충과 현장 지원과 컨설팅으로 기록관리의 목적에 따른 변화를 주어야한다. 담당자 B의 의견이다.

“시도교육청이 매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을 바꾸더라

도 2년 혹은 3년에 한번 주기로 해야,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실제 기록관리가 발전된다.

평가하고 발표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한 두달 정도로 짧게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받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기간을 줄여야한다. 평가 결과 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컨설팅 명목의 교육같은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가 담당자 수도 현재의 3~4명이 아니라 최소한 6~7명에서 10명 정도는 되어야 해당 기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같은 지원이 가능하다.”

2) 지표적 측면

담당자들은 한목소리로 지표 수가 한 해에 다 하기에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담당자 C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달성한 지표들이나 계량화 하기 어려운 것은 없애고, 기관 조직인원장비 같은 인프라나 평가폐기같이 반드시 필요한 지표 외에는 자율적으로 기관 실정에 맞도록 해야한다. 필요하지만 반드시 1년 안에 꼭 할 필요가 없는 지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우수사례를 살려서 실제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담당자 D는 이렇게 말한다.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은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점수(1~2점 정도)를 배정해야 한다. 일정수준에 오른 기관(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이나 중앙행정기관, 혹은 다른 유형의 기관)은 우수사

례를 일종의 경진대회나 기록엑스포 같은 형식의 장을 만들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모든 기관의 제출 우수 사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상을 준다거나 혹은 평가 결과를 발할 때 평가과정을 밝히고 참여한 기관에 중간 결과와 이의 제기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구심없이 공감할 수 있어야 평가의 목적을 살릴 수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2015~16년도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보고 느낀 부분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장을 벗어난 기록관리는 존재의 의미를 잃을 것이다.

기관평가의 문제는 많은 해결해야할 점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가장 중요한 국가기록원과 피평가기관간 소통의 문제도 부각되었다. 공개재분류처럼 법령에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 지도점검이나 기록관 열람규정처럼 심사숙고 없이 시행했다가 변경한 부분, 기록물 폐기 같이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지표의 적절한 반영, RMS 운영과 전자기록물 이관 같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우수사례나 정책과제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로 인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결론적으로는 기관 출세우는 모습으로 변한 문제들이 평가와 관련하여 거론되었다.

이상의 문제들이 쉽지 않겠지만 단순한 평가지표의 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의견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는 기관평가를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개선시키고 피부에 와닿는 긍정적 변화를 견인 하고 이를 계기로 기록관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길 기대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in and the Improvement of the Archives Evalu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won, Do-gyun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rchives Evaluation System in 2008, the Republic of Korea's archives management has undergone many changes and great development. However, there remain process problems in several operations of concerned agencies. These are made up of problems in the system itself (operation-related problem), problems in evaluation indicators, and issues in communication issue between the rating agency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rated institutions.

This study was a theorem for such status of the concept, objectives, and the indicators of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s it looked into the problems and sought improvement of the systems and indicators.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system were felt in the survey of the education field, which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and phone interviews with the Office of Education's archives managers and researchers. Among the problems found were the assessment period, the number of indicators, evaluation process, the assessment indicators, and the best practices. Moreover, this study summarized the comments of the archives managers on what they believed are needed to improve the field.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structural and fundamental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are need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opes that an archives management business for the public institu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Key words :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indicators, Evaluation process, Improvement